

• 1988년 6월 1일 발행
 • 발행인 / 이호재
 • 발행처 / 한국여성민우회
 • 1/2(9) - 0(1)(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0-6
 ☎ 313-1060
 • 값 / 500원

함께 가는 여성

1988

6

통권 제10호



비교적 근무조건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사무직여성노동자들도 실은 월급차별·승진승급차별·후생급여차별 등 갖가지 부당한 현실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결혼희퇴금지 등 몇개의 사항을 빼고는 여성들의 이러한 차별현실을 전혀 극복시켜주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목차

- | | | | |
|-----------|---------------------------------------|-------|--|
| 2 | 이렇게 생각한다 / 변(反)민주억압의 시대 | 15 | 만남 / 한국자유총연맹노동조합 최자호 위원장 |
| | 여성만평 / 통일논의도 '관계가근대백화점'에서...? | 16 | 우리동네 이야기 / 상술 교통사고, 주민들이 익아냈다 |
| 3 | 생활속의 실천 / 공해예방, 남의 일이 아니다 | | 날말맞추기 |
| 4-5 | 여성노동의 현장 / 아저씨들이 움직인다 | 17 | 여성민주노동당 / 손기락이 물었다 |
| 6 | 방문기 / 5월에 찾은 광주 "공주중앙 여성들의 활약도 규명50여" | 18-19 | 아담의 소식 / 민우회·서교협 주최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토론회' |
| 7 | 참가기 / 새마을학교 헌반도 평화협의회 "물고 뜬 통일논의" | | 노동부, 민우회 공개질의서에 헌당헌에 담긴 브로와, 민전, 민우회 해남농 |
| 8-9-10-11 | 지상중계 / 남녀고용평등법 토론회 | | 집들이 겸 마을잔치·무치려 열린 문구동 차관·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결 |
| 12 | 생활칼럼 / 가정의 달, 선물 주고받는 달? | | 성 |
| 13 | 바른 문화 / 한미당 어린이 민속학교 | | '함께 가는 여성'을 읽고 / '아라리'에 대한 거부감을 떨칠 수 있을 |
| 14 | 직장내 폭력추방운동 / 보고서·방아쇠연재 운동으로 확산/호소문·한 | 20 | 게시관 / 남녀고용평등법 자료집 판매·6월중 발간할 직장내 폭력추방운 |
| | 정 여성노동자 "알라비타를 사실 신고문서로" | | 동 책서 |

이 경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반(反)민주 악법의 시대

5월 25일 17년만에 석방됐다는 서준석씨(40·전서울법대생) 소식은 그가 다시 세상빛을 보게 됨으로써 동시에, 감옥밖에 있던 많은 세상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실형 7년을 다 살고도 2년마다 갇히는 감옥생활, 그리하여 언제 그 갇힘이 중단될지 모르는 생활을 곳곳이 건너온 서씨의 의지도 놀라지만, 더 놀라운 것은 세상에 그런 터무니없는 '사회안전법'이란 게 버젓이 걸에 있었는데도 '나 몰라라' 지내온 우리를 스스로의 무관심이었을 것이다.

서씨는 황금같은 17년의 청춘을 고스란히 감옥안에 바치고 나왔다. 그러나 어디 그게 서씨뿐인가. 이름도, 숫자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이들이 철저히 바깥세상과 차단된 채, 단 한번 항변하고 호소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안전법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즘 한창 떠들여지기 시작한 '반(反)민주악법'이 판치는 세상, 오늘의 현실이다.

하루 아침에 1백30개씩 출몰

너무도 당연히 반(反)민주악법들은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더이상 그 어떤 한 인간도 소수만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악법 때문에 부당한 고통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5월 한달동안 정치권에 서 다뤄지던 반민주악법 개혁 논의는 너

무 한가하다.

총선 직후 포문이 열리기 시작한 이 논의는-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공약상 이 논의는 필연적이었다- 16일과 24일, 27일, 민정당과 민주당, 평민당이 각각 자기당의 안을 내놓음으로써 본격화되고 있으며 각 당이 제정·폐지·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법들은 무려 1백30개 이상씩이다.

물론 여기서 지금껏 십수년을 정치생활이랍시고 해온 구정객들에게 '그동안은 왜 입법국 못했냐'는 질문을 해대기 시작해도 그 자체가 한참 걸리겠지만 다 생략하고 현재만을 보더라도 문제는 많다.

1백여개 되는 법들이 일단 반민주악법임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자칫 이런 식의 나열작업은 오히려 앞서 언급된 사회안전법이나 국가보안법 혹은 노동관계법 같이 진짜 시급히 폐지·개정되어야 할 반(反)인간적인 악법의 문제를 희석화시킨다. 그러기에 벌써 정가에서는 이 모든 법을 다 처리하자면 족히 1년은 걸릴거라는 등 벌써 '사무적인' 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하나, 우리 여성의 입장에서 가족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가족법은 각 당이 내놓은 개정 대상에 다 들어가 있다-민법의 제4편(친족)과 5편(상속)을 우리가 통상 가족법이라 부르는데 이번 개정 대상에 '민법'이 들어 있으므로 우리 당연히 가족법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가족법은 그 개정운동의 역사성 때문에라도 좀더 강력히, 확실히, 진보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이에 개정대상에서

조차 빠져있다. 아마 제정된 지 얼마 안됐다는 인식, 또 그러저럭 잠된 거 아니냐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역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하여 소지가 너무나 많으므로(자세한 내용은 본문 8~11면 참조) 이번에 꼭 개정되어야 한다.

가족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하라!

혹 여성들의 이런 요구가 마치 별것 아닌 것을 침소봉대하여 외쳐대는 것처럼 생각할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린 분명히 말하고 싶다.

가족법이나 잘 지켜질 수 없게끔 만들어진 남녀고용평등법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은 가슴앓이를 하며 평생을 산다. 가난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천시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해진 '여성'이란 운명 때문에...

물론 이 여성들 전반적인 고통은 앞의 서준석씨 같이 극적인 비극이 아닐 순 있다. 그래서 그 처지를 듣는 순간 두주먹 불끈 쥐고 분개할 그런 성질의 고통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사실 여성들 대부분은 이와는 다른 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물어찌꺼야 나아질지 알 수 없는 숙명의 굴레 같은 고통을 받으며 산다. 바로 일하는 여성들의 고통, 또 돈을 벌러해도 천시받지 않고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가난한 여성들의 고통이 그것이며, 그런 점에서 이를 해결하진커녕 더 악화시키고만 있는 반(反)여성 반(反)민주적인 법률의 개정은 반동의 불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제반 반민주악법들을 하루빨리 폐지·개정하라!

가족법·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라! ■

여성만평



통일논의도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그림·박경미



공해추방, 남의 일이 아니다

직접 피부로 느끼는 혼탁한 서울의 대기오염, 합성세제 거품으로 뒤덮인 중앙천, 적조현상으로 죽어가는 바다...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이런 기사들을 접하고 살지만, 그리고 또 이런 공해를 막기 위해선 무엇무엇을 써야하고 또 무엇무엇을 안써야한다는 잔소리 같은 충고까지 악히 듣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째서 이게 꼭 내 일 같지가 않다.

그것은 전폐증 위험을 받고있는 연탄공장 주변의 사람들 아니면 적조현상을 일으키는 바다 때문에 당장 생계가 막혔다는 무슨무슨 만 어부들이 나서야 할 문제처럼 일단 느껴지는 것이다. 또 설 것이를 할 때 합성세제를 안쓰고 머리감을 때 삼푸를 안써야한다고들 하지만 그로 인한 불편이 어디 한두가지인가. 게다가 내가 애써서 공해물질 배출을 막는 다해도 다른 이들이 꿈쩍도 않고 있는데 그야말로 한강물에 돌 던지기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런 두관심은, 우리가 당장 몇가지의 자문에만 응답해봐도 여지없이 깨어진다.

●오염된 물, 오염된 공기의 피해는 누가 보는가? - 처음에는 몇몇 직접당사자들이지만 곧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두손 놓고 마구 빠져나가는 공해물질을 방치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 공해투성이가 되어 곳곳에서 생명을 위협, 단축시킬 것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피부병, 탈모 등을 일으키는 합성세제

우선 우리가 늘상 쓰는 합성세제의 예를 보면서 공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아보자.

합성세제란 비누 이외의 모든 세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애용하는 하이타이·트리오·풍풍·삼푸·린스 등이 이에 속한다.

먼저 합성세제가 인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면, -세제가 잔류된 수도물이 손, 얼굴, 머리, 피부에 묻어서 또는 과일, 야채, 식기에 묻어 체내에 흡수된다- 간장의 활동이 저하되어 안색이 검게 되거나 기미가 끼게 되며, 세제를 쓰는 가정주부의 손이 트고 껍질이 벗겨져 붉어지고 가려운 현상이 생긴다. 합성세제로 세탁한 기저귀를 쓰는 신생아들에게 많이 생기는 습진은 합성세제가 일으키는 피부병의 한 종류이다. 또한 삼푸는 머리카락을 가늘게 하고 탈색시키며 탈모현상을 일으킨다.

게다가 식용으로 만들어지는 합성세제는 땅과 물을 오염시켜 농업과 어업에도 큰 피해를 입힌다. 합성세제는 물위에 거품을 형성하여 공기중의 산소가 물속에서 용해되는 것을 중지, 하천의 자체정화능력을 감소시키며, 세제속에 함유된 인산염이 하천이나 바닷속 식물의 영양분이 되어 수중식물을 급속히 자라게 하고, 이 식물이 부패하면 암모니아·메탄가스의 발생으로 물속의 산소가 고갈되어 썩게 되므로 물고기가 죽게 된다.

합성세제의 이러한 독성은 1리터의 물에 0.1리터의 합성세제를 넣었더니 송사리가 2시간 15분만에 모두 죽었다는 실험을 통해서도 한눈에 드러난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합성세제를 안쓰는 방법들은 꽤 많이 알려져 있다.

●빨래할 때는 꼭 비누를 쓰고 세탁기에는 빨래를 비누질해서 넣는다.

●모든 식기를 합성세제로 씻지 말고 기름기 있는 그릇만 골라서 뜨거운 물이나 주방용 비누를 사용하거나 개어놓은 밀가루를 이용해서 씻는다.

●과일은 세제의 사용없이 물로만 여러번 씻는다. 포도는 식초탄 물에 담갔다 씻고, 딸기는 소금물에 씻는다.

●머리는 비누로만 감으며 머리카락이 뻣뻣하다고 느낄 때는 물에 식초를 조금

떨어뜨려 행구면 린스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정부의 정책 전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위와 같은 실천이 비록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는 정말 너무도 부분적인 해결일 뿐이라는 점이다.

실제 연구결과에 의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꼽힌 것은 공장에서 유출되는 유독성 화학물질과 폐수 및 연기,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서 뿜어내는 배기가스들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우리 양심적인 시민들이 정부 전체를 뒤흔들 움직일 수 있게 되거나 혹은 모든 기업가가 자신의 이익보다 환경보호를 우선시하겠다는 양심선언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우리 시민들로선 속수무책인 것이다.

이런 점에 생각이 미치고 보면, 공해를 추방하고 우리의 환경을 깨끗하며 쾌적하게 유지하는 지름길은 정부 차원에서 제정되는 강력한 공해규제법과 제재조치임을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장본인인 대기업들이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소박한 바램은 그냥 바램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제를 푸는 길은 공해피해의 당사자인 시민들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힘을 결집하여 정부의 대공해정책 수립 촉구를 포함한 광범위한 공해추방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런 전반적인 움직임이 선행되어야만 가정에서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작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실천하자!

① 가능한 한 많은 주위 사람들과 함께 공해에 관한 공청회·집회에 참석해 본다. 문제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② 합성세제 안쓰기 등 가정내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해낸다. 자신 혼자만의 실천이 중요한 게 아니므로 이때는 반드시 주위 사람들에 대한 설득, 확산 작업을 더 크게 염두에 두어야한다. 이를 통해 올바른 공동체의식을 심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③ 공해생산업체, 혹은 공해품인대도 무공해품인양 과대허위선전하는 생산업체에 대한 항의전화를 한다.

④ 공해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의 회원이 된다. 회원에게 배포되는 회지에는 공해와 공해추방운동에 관한 지속적인 소식이 담겨있다. 현재 이런 단체로는 한국공해문제연구소(762-6879), 공해만대시민운동협의회(738-4547),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743-8840)가 있다. ■

여직원회가 움직인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꽃꽂이 강좌·양로원 방문 등이 활동의 대명사였던, 그래서 회사측의 말 잘들은 '환경미화 부대'이기도 했던 기업체내 여직원회가 변모를 꾀하고 있다. 여성권익을 위한 강좌, 민주적인 회칙개정, 노조와의 긴밀한 유대 등 곳곳에서 그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5월 18일 아침출근시간 여의도에 있는 러키금성 한 제철사에서는 3개층에 걸친 각 사무실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당연히 남직원들보다 먼저 나와 사무실을 정돈하고 있어야 함' 여직원들이 9시가 가깝도록 일체 나타나질 않았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순간 일어났다. 9시 '땡' 소리와 함께 각 사무실로 들어닥친 여직원들은 모두 가운아닌 사복 차림이었다. 85명 되는 여직원들이 단결, '9시 정시출근 6시 퇴근 가운벗고 일하기'라는 시위의 한 방법을 실천한 것이었다.

이 날의 '시위'는 남직원에 대한 항의도 가운착용에 대한 거부도 아닌, 회사측에 대한 '임금인상요구'에서 비롯됐다. 이틀전 여직원회 주최로 열린 '성년의 날' 축하자리에서 "이젠 우리도 임금인상에 대해 얘기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의견들이 조심스레 나오기 시작했으며 여기에 "우리 회사는 여직원들에게 정기적인 호봉승급만 할 뿐이지 임금제도를 자체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정보가 전해지면서 이 문제의 시정을 집단적으로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노조가 없는 이 회사에선 여직원회밖에 길이 없었다.

회사측은 물론 발칵 뒤집혔다. 그러나 결국 회사측의 배짱과 회유를 견뎌내지 못한 여직원들은 '임금제도에 대해 직급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약속만을 받아낸 채 이날 하루의 시위를 끝내

게 되었다.

이 회사의 한 여직원은 "착실히 다져진 의식 없이 큰일을 벌여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뜻을 모아 단체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자체로는 성과를 못본 셈이지만 이 여파로 구미쪽 지사에서조차 비슷한 단체행동이 일어났으며 남직원들내에서도 '노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

여직원회의 '제자리찾기' 운동

이 작은 사건은 요즘 빈번히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굵직한 직장소식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해프닝일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를 여직원회가 주도했다는 데서 눈길을 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꽃꽂이 강좌·양로원방문 등이 활동의 대명사였던, 그래서 회사측의 말 잘들은 '환경미화 부대'이기도 했던 기업체내 여직원회가 변모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주로 사무직내에 만들어져 있는 여직원회는 원래 사규에도 없는 임의단체, 즉 노조와 달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회사측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만인 천지한 천목단체이다. 대개는 회사측이 주도해서-이 경우 효율적인 여사원 관리를 위해-만들어지며 그외 여직원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회사측이 인정 혹은 묵인해 주는 정도.

입사와 동시 거의 자동적으로 여직원

회 회원이 되며 회비는 회사에 따라 월 2천원 내지 5천원. 임원 선출방식은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회사측 임명·대의원회 선출·직선제 등 다양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차이가 별 의미가 없어왔고 여직원들은 말하고 있다.

"대개 소수 임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일반 여직원들은 임년에 몇 번 열리는 친목모임 등에서나 여직원회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대표를 어떻게 뽑아야겠다는 생각은 아예 할 기회가 없지요"

그러나 이렇게 말한 여직원 역시 요즘은 부쩍 활발해지고 있는 여직원회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온다고 덧붙였다.

얼마전 한 일간신문에는 금연운동을 주도해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여직원회 몇곳이 소개되기도 했으며 또 과거 의례적으로 강사를 초빙 '직장생활 예절' 등을 들던 여직원회 교육 프로그램이 최근 사회 전반적인 관리의식에 발맞춰 '직장내 민주주의의 확립' '여성의 권익'

●정기강연회 1●

강연회 제목: ...

강연회 내용: ...

●정기강연회 2●

강연회 제목: ...

강연회 내용: ...

●정기강연회 3●

강연회 제목: ...

강연회 내용: ...



여직원회 주최의 여직원회 체육대회 모습. 여직원회 주최의 체육대회 모습이다.

등으로 그 주제가 옮겨간 예도 눈에 띈다. (주)한전의 경우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여직원회 주최의 주1회 탈출강습이 열렸다. 여성단체 문화원의 도움을 받았으며 끝까지 참가한 인원이 약 25명.

이러한 여직원회 활성화가 사실 당연히 있어야 할 '제자리찾기'라 한다면, 반면 '천목도모'를 위해 만들어져있는 기존 여직원회의 성격 자체를 변모시키려는 '보다 근본적인 제자리찾기'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주)한전 여직원 대의위원회는 지난 1월 10년동안 묵혀있던 여직원회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래의 회칙 '목적'은 '본회는 본사 여직원이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봉착 가정과 직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로 되어있어 다분히 노무관리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여직원들이 앞장서 이를 '본회는 여직원간의 천목도모·상호부조 및 권익향상을 위한 제반활동을 하는 데 있다'로 고친 것. '목적'의 변경에 따라 사업내용도 대폭 개정되었다.

또 지금껏 완전 문예지화되어 제간으로 나오던 여직원회 회보 '청학'지 봉호에는 처음으로 '여직원회 소식'이 실렸다. 소식란 실린 게 무슨 큰일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정작 이 변화는 사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직원 동정이 실리면서 '남자직원은 인사이동에 질서가 있는 것 같지만 여직원은 상사 마음대로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야 한다'는 작은 문제제기가 의외로 큰 회사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어느 기업보다 여직원들의 힘이 센 편인 제2금융권에서는 주관심사인 승진·승급문제, 결혼희박문제를 놓고 토론모임을 갖는 예도 꽤 있다. 중앙부자의 경우 여직원회가 산전산후휴가에 대한 논

의를 한 후 단지 그 결과를 회사측에 건의함으로써 그대로 시행되기도 했다.

노조의 모태가 되기도

직장내 노조가 들어섬에 따라 여직원회의 역할과 성격도 크게 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조가 생기므로써 여직원회의 역할은 보다 축소되는 경향이 있겠지만-큰 문제들은 노조의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되므로- 적어도 노조가 만들어지는 과정, 또 그 노조가 탄탄히 뿌리내리기까지에는 여직원회의 몫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해상·교육보험·한일부자 노조 등은 노조설립이 활발했던 지난 몇년동안, 기존의 유일한 공식조직이었던 여직원회의 힘을 업고 만들어진 민주노조의 전형들이다.

아예 여직원회가 그대로 노조를 만든 예도 있다. 제일부자와 동서증권의 경우 그래서 여직원회장이 노조위원장이 되기도 했다. 물론 이 경우는 둘다 부득이한 내부사정이 있기도 하고 또 너무 여직원 중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남자가 여자 밑에서 일하느냐' 식의 남직원들의 즉각적 반응을 초래하기도 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노조를 만들기 전 그만큼 여직원회 중심으로 조직력이 모여있었다는 사실만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

이같이 노조와 여직원회와의 결속력이 강한 경우에는 여직원들의 문제를 노조가 적극 해결해주어 여직원회가 따로 나설 이유가 없을 정도다. 동서증권의 경우는 새로 뽑힌 여직원회장이 노조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노조와 여직원회의 일원화 현상을 드러내준다.

또 이렇게 여직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대개 동종업체끼리 부정기적인 여직원회장모임을 가져 연대의식을 강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직원회는 그 '임의성'이 곧 장점이자 한계가 된다.

회사와 사이가 좋은 한에서는 상당한 자율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측이 일단 죄어오기 시작하면 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데이터통신 여직원회는 수년전 가운데축을 거부하고 나온 이후 회사측에 의해 해산되었다.

회사측의 자금지원도 종종 축쇄가 된다. 여직원회는 통상 월 혹은 연 수십·수백만원씩의 회사측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동차보험의 경우 막상 여직원회가 좀 '바람직한' 교육을 실시하려 하자 자금지원을 명분으로 회사측이 강사

교섭까지 관여해 원래의 한이 수정되기도 했다.

또 노조내의 여성부와 달리, 여직원회는 전체 사원의 이익이란 관점보다 여직원의 이익이란 관점에 우선적으로 서게 되어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성부자에서처럼 노조가 주도한 단체협약 기간중에 여직원들에 의해 여직원 청소문제가 전면부각, 청소를 거부하는 바람에 회사측에 구실을 줘 단체협약 자체가 실패한 예도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철저한 상호신뢰와 의견수렴, 토의과정만 제대로 거쳤더라도 사전에 방지될 수 있는 일인 건 하지만 기업체내의 조직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까지 무수히 거쳐야 하는 시행착오의 하나로 꼽힐 수 있다.

민주회에서 주최 현재 4기째 열리고 있는 직장여성교실에서는 기 마지막 모임마다 '여직원회 활성화방안'에 관한 분반토론이 있어왔는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여직원회 명의로 좋은 도서를 구입하여 여직원들이 읽도록 한다. 여성단체가 독서목록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 여직원 교육의 일환으로 좋은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다.

- 현재로선 여직원회가 임원진 성격에 따라 좌우되는 형편인 만큼 여직원회장 선출에 신중을 기한다.

- 여직원회 활동 모두가 노조와 똑같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노조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안건, 예를 들면 호창·기운 문제 등을 여직원회에서 더욱 세밀하게 끼낼 수 있고 여직원들 주변의 공감을 얻는 등 노조여성부를 통해 대회사교섭을 벌이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여직원 '천목'도 큰 의미

"노조가 없는 회사는 우선 여직원들을 이용해 노조를 만들도록 애를 써야 하겠지요. 노조가 잘 굴러가는 경우에는 여직원회가 어떻게 하면 노조활동을 보완하면서도 여성의 특수이익을 잘 실현할 것인가, 또 대다수 여성들을 한데 뭉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1년 임기를 다 채워간다는 C기업 여직원회장 K씨(28)는 만약 노조가 제대로 서고 그 관계가 제대로만 형성된다면, 여직원회가 그야말로 '천목'-진정한 의미의 천목- 그 자체를 위해서만 충실히 일하더라도 민주적인 직장확립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광주항쟁, 여성들의 활약도 규명돼야

정양희 (민주회 회원)

민주회 회원들이 오월 여성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고속버스터미널에 모인 것은 5월 15일 7시 30분. 수원과 인천에서 새벽길을 달려온 사람도 있었고 뒤늦게 열레벌떡 뛰어온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의 숙연한 눈빛들은 출발의 의미를 새삼 일깨워주었다. 해방을 위한 민주항쟁과 적절한 상흔의 도시 광주, 그 역사적 비극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도시 광주를 8년만에야 찾게 된 것은 너무 늦은 감이 들었다.

광주에 도착하니 11시 30분. 간단히 점심을 마치고 우리는 광주전남여성회(광주직할시 신안동 649-29)에 집결했다.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모여 각각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나눈 다음, 광주전남여성회 이소라회장으로 부터 환영사와 오월여성대회의 광주 개최가 갖는 의의를 들었다. 하루 일정이 바빠 곧바로 YWCA추모관으로 가서 광주헌들의 추모사진전을 보고 묵념을 올렸다. 당시에 자행되었던 그 참담한 살상의 날날들은 다사롭고 평화로운 이 남도에서 과연 무슨일이 벌어졌었던가를 생생히 말해 주었다.

망월동으로 떠나기 위해 다시 버스에 올랐을 때는 이미 후덥지근한 남도의 열기가 온몸을 감쌌다. 버스는 80년 5월의 치열했던 항쟁의 거리 금남로를 지나 민족광장이라 이름지워진 도청앞을 달렸다. 세무서와 MBC방송국을 지나갈 때 누군가가 시민들이 왜 80년 5월에 두 건물을 불태웠는가를 설명해 주었다. 세무서는 부당한 온갖 잡세로 시민들을 괴롭혀 왔을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군대가 국토방위라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한 것에 대한 분노의 표적으로 불태워졌으며, MBC방송국은 공수부대의 잔혹행위에 보호본능으로 맞섰던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세우고 진실을 유언비어로 매도하며 왜곡보도를 일삼았던 언론에 대한 응징으로써 불태워졌다고 한다.

이후고 망월동에 도착하니 많은 시민.



광주민주항쟁 8주년을 맞아 이를 여성의 입장에서 재조명·평가하려는 취지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광주전남여성회가 마련한 지난 5월 15일 '5월 여성대회'에 본회에서 회원 20여명이 참가했다. 한 회원의 참가기를 실는다. 편집자주

학생·유족들이 참배하고 있었다. 묘역 입구의 안내문에는 원래 안장되어 있던 1백26기의 묘중에 26기가 당국의 종용으로 이장되고 있었고, 그 밖에도 11기의 무명열사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었다. 분향을 마친 뒤, 30여명의 유족들이 묘역을 지키기 위해 천막을 치고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유족들의 증언을 들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는 그때 국민학교 5학년이었던 딸이 지금 대학교 1학년생이 되었다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것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8년간 온갖 수모와 탄압을 받아온 것을 생각하면 분하고 원통해서 견딜 수 없다며 끝내 오열하였다. 유족들은 지난 8년동안 전○나 노○X가 올 때마다 혹은 민주집회나 선거유세가 있을 때마다, 가택연금되거나 닭장차에 실려 경상도나 경기도 등에 짐짝처럼 버려져 왔다고 말했다.

이소라회장의 안내를 받아 묘역을 순례하다 보니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화사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눈에 띄었다. 이름은 최미애. 1958년생인 그녀는 80년 5월 21일 교사인 남편을 찾아 나섰다가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집앞에서 참변을



망월동 묘지에서 참배하는 여성들(위)과 5월여성대회(아래)

당하였다. 노란 국화꽃이 온통 무덤을 감싸고 있는 한 묘비앞에서 걸음을 멈추니 묘비의 주인은 87년 2월에 불신자살한 박선영(당시 서울고대 재학중)이었다.

박선영씨의 어머니는 딸이 죽고서야 이 사회가 얼마나 억압적인가를 깨달았다면서 우리의 예쁜 자식들이 제대로 살아가려면 독재가 먼저 타도돼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묘비 뒷면에는 역사가 진정 원하는 인간이 되어 다시 살아나오겠다는 유언이 적혀 있었다.

망월동 묘역을 떠나온 두렵에도 참배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고, 힘차게 노래부르며 걸어오던 여학생들은 우리가 탄 버스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오월 여성대회가 개최되는 가톨릭센터 7층에 도착해 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 강단에는 '반도를 등에 업고 모두 한걸음 더 나아가자'라는 표어가 붙어 있었다. 참가단체를 소개하는 가운데 양동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아주머니들과 여성농민들도 눈에 띄었다. 대회는 이소라회장의 대회사와 영광에서 농민운동을 하시는 김소흥씨의 강연, 5.18당시 취사반으로 활약했던 여성의 증언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 증언에 나선 송모씨는 당시 도청에서 취사반을 맡았던 여성들의 활동과 당시상황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광주항쟁에서 활약했던 여성들의 활동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는 '한국민중의 절반인 여성들의 의식개혁과 참여없는 어떠한 대중운동도, 민주화도, 민족통일도 쟁취될 수 없음을 명심하고 모두 한걸음 더 나아가자'는 성명서를 채택하며 끝을 맺었다.

6시 30분에 서울로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비디오 상영은 보지 못하고 광주를 떠났다.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느꼈던 짧고도 긴 하루였다. 어두워져 가는 창밖을 보며 어둠이 깊어갈수록 더 밝아지는 별빛처럼 광주가 나의 뇌리에 되살아올름을 느꼈다. ■

참가기/세계기독교 한반도 평화협의회

지난 5월 28일 열린 청와대 4자회담 보도에 따르면 4 당대표들은 통일문제가 민족의 가장 절실한 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관계를 비롯한 통일관계자료의 공개, 초당적 차원에서의 통일정책 추진, 남북한 교섭통로의 일원화 대 다원화의 문제제기 등 기존 정치권 차원에서 본적 통일논의를 출발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문익환, 이부영, 백기완씨 등 재야인사 20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노동·농민·재야단체 등 전국 67개 민주사회단체 명의로 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범민주단체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선언에서 ① 제24회 국제올림픽은 반드시 남북한 공동주최, 민족단일팀의 공동올림픽이 되어야 하며, ② 남북한 각계각층의 자주적 교류는 보장되어야 하며, ③ 6·10 남북학생회담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진통일' '평통통일'을 제외한 어떠한 통일논의도 용공으로 몰리기 일쑤였고, 반공법,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 속에 위축되었던 그간의 사정을 돌이켜 보면 이와 같은 구체적인 통일논의에서 우리는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

82년부터 꾸준히 전개해온 기독교계의 움직임

이러한 통일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데 크나큰 계기가 되었던 움직임으로, 나는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줄곧 추진되어온 기독교계의 다각적인 통일논의와 실천노력을 들고 싶다.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논의가 극도로 제약되어 있던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미 82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통일문제연구원을 설치하고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그 결과 세계의 기독교 대표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경험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되어온 기독교계의 통일논의는 지난 2월 29일 KNCC가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과 이에 대한 세계교회의 전폭적 지지와 연대를 목표로 한 4월 '세계기독교 한반도 평화협의회'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번 회의는 애초 정부측이 공산권국가-소련·동구 포함-참석자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내락했었다가 막판에 취소하는 바람에 김포공항까지 온 동구인들이 되돌아가는 등 마찰도 많았으나 그 때로 일단 회의가 개최된 후부터는 세계인이 하나가 되어 참된 평화, 진정한 한

'공동올림픽 개최' 등을 주장하며 투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전후하여 최근 대화가 사회운동권에서는 통일논의가 한창이다. '올림픽 공동개최'라는 이슈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이 일련의 공방전은 그저 어느 한쪽의 일기나 넘기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우리 민족 전체의 앞날이 달려있는 문제라 여겨진다. 「함께 가는 아성」에서는 본격적인 통일문제 기획을 다음호에 기약하며 대신 이번호에는 한반도 통일문제를 주제로 하여 지난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동안 열렸던 '세계기독교 한반도 평화협의회' 참가기를 실는다. 편집자주

통일논의의 물결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열렸던 이 국제회의는 한반도 통일 논의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 왔다.

강선미

(송실대)

기독교사회연구소 연구원

반도 통일을 논의하는 뜨거운 열원의 장이 되었다.

이 회의에서 느껴진 깊은 감동은 각국에서 억압당하는 자들의 해방이 곧 평화와 통일을 통한 우리 한민족의 해방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자각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참석자 상호간의 깨달음의 의지였다고 생각한다.

이 일련의 선언문, 회의는 분단극복과 평화통일을 향한 한국교회의 공식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그 내용은 정의와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전통, 민족분단의 현실, 분단과 중도에 대한 죄책고백, 민족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본원칙, 남북한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건의,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 등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교회사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한국민족사에 있어서도 뜻깊은 의미를 지닌다. 특히 기독교의 죄책고백은 냉전시대의 사고방식과 결별을 선언하는 한국교회 최초의 공식적 입장천명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민중이 통일논의의 주체가 돼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내용들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약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통일 주체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정부는 통일논의의 개방화라는 제목아래 '중간중 주도의 통일주체세력 확보'라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나온 선언문의 내용은 통일논의의 독점지양, 언론의 자유,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과 불가침 조약 체결, 한반도 전역에 걸친 평화와 안정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주한 미군철수와 주한유엔군 사령부 해체, 상호군사력 감축, 핵무기철폐, 외세의 간섭, 민족이익에 배치되는 모든 외교적 협상이나 조약의 수정 또는 폐기 등 때

우 전일보한 측면이 돋보인다. 그러나 민중주체의 통일논의의 부분이 빠짐으로써 마치 정부의 중간중주도 통일주체 설정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하겠다.

평화란 약한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곧 민중이 가장 깊이 탄식하고 갈망하는 열원이기 때문에 민중 주체의 통일과 평화통일이 곧 분단극복과 통일운동의 주류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이런 입장이 더욱 강화된 통일논의가 기대된다. ■

남녀고용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5월 7일 종로성당 강당에서는 민주회와 여성한국사회연구회 공동주최로 '남녀고용평등법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발제, 현장사례, 논평,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주



발제1 - 이승희 (이대 강사)

법내용·실효성 모두가 약하다

구미선진국에서는 이미 6, 70년대부터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을 막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 영국·프랑스·덴마크 등에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법'이 먼저 제정된 후 이를 보충하는 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고 미국·이탈리아 등에서는 고용평등법이 차별임금금지 규정을 포함하여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때 이 법의 목적은 ①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포함한 평등한 근로조건 확보 ② 철저한 모성보호 ③ 여성이 평생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평생노동권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 법이 이미 18개국에서나 제정되어 있으며 UN 차별철폐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지킬 수밖에 없게 된 대외적 압력,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적 목적, 또한 8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성장한 여성운동의 결과 작년 10월 30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정작 이해 당사자인 여성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제정 과정 자체에서부터 한계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법을 꼼꼼히 따져보면 결국 확실히 보장되고 있는 것은 조기정년·결혼퇴직 거부(위반시 2백50만원의 벌금)와 1년의 육아휴직 권리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퇴직 금지도 근로기준법 2장 27조를 볼 때는 오히려 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못함'이라는 27조에 의해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면 부당해고이므로 사표를 강요해 본인이 사표를 제출해도 부당해고'라는 보건사회부·노동부 예규(1421 1962. 5. 24)가 이미 나와 있으며, 이를 위반시 2년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이 오히려 법칙이 약한 셈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념도 문제

이 법은 이같이 법칙에 의해 실효성이 없다는 점외에 전체적인 법조항 자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이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노동총의 시행령 전의안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

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준을 '동일한 학력자로 동일한 직종에서 동일한 일을 할 때'로 규정한 경우 우리나라에선 그같은 조건으로 남녀가 동일한 노동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노동의 규정은 생산직에서는 동일숙련도로 되어야 하며, 사무직에서는 직무분류체계나 직책수당체계가 남녀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모성보호조항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생리휴가확보, 1일 수유시간확보, 탁아소 설치, 심야업·유해작업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조항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고용평등법의 내용이 강화되어야 하고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기간에 포함시키는 조항, 출산휴가의 대상에 유산·조산의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조항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여성의 평생노동권 확보를 위한 조항이 강화되어 결혼·임신·출산퇴직금지와 평등한 직업훈련 기회의 확보,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철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 즉 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의 문제, 차별금지 방법의 문제, 차별구제기관의 문제도 제기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재 근로기준법과 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가 같은데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나 16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대상에서 배제 - 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육아시설 설치의 경우, 시행령안을 볼 때 상시근로자 3백인 이하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데, 그



렇다면 전여성노동자의 43%밖에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되려면 의료보험의 적용범위에 따라 16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최고 차별구제기관으로 고용문제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관의 권한은 조정안을 수락하도록 권고하는 것뿐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발포할 수 있는 준사법적 권한을 갖거나 위원회 차원의 행정적 구제이외의 사법적 구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장에서의 조정신청자격을 당사자뿐 아니라 당사자를 대신한 노동조합으로까지 확장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현재는 노·사·공- 사업주대표, 여성노동자, 여성계대표로 하고 이때 여성계 대표는 교수, 공무원외에 여성운동단체 대표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차별금지방법이 현재로서는 -결혼 임신피착을 제외하면-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 규정에 불과하므로 보다 강제적인 차별금지방법이 촉구됩니다.

발제2 - 최영희 (민주회 부회장)

여성노동자의 의지가 이법의 앞날을 좌우

우리가 누차 경험했다시피, 우리의 권리, 노동여성의 권리는 기업주가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결국 필요한 사람이 현실을 극복, 그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혼자서 아닌 문제를 같이 느끼고 해결하고자 하는 주위 동료와 함께, 즉 조직을 통해서 실현이 가능합니다. 즉 직장내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 복지증진은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노동조합을 통해 보장된다는 점에 유의, 민주노조건설에 여성노동자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에서 우선 남녀고용평등법의 유리한 조항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현실이 단위사업장내에서의 운동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 한계는 명확합니다. 기업가들도 조직적으로 이러한 요구에 대처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도 전체여성의 조직된 힘으로 집단적인 기업주의 힘에 대항해야 하며 따라서 단위사업장을 뛰어넘는 전체여성의 조직적 운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 동종업계의 동료와 함께 문제해결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전취업여성의 조직적 운동 및 여성단체와 연

대하여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현장사례 1 - 장영이 (전 영남의료원 교원원·본인 불참으로 본회 사무국장이 대신했다)

결혼퇴직, 옛말이라구요?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 제 많은 직장에서 결혼퇴직이 없어진 것 같지만 지방에선 그야말로 다른 세상 얘기입니다. 여기 대구 영남의료원 장영이씨의 호소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교환원으로 근무하는 만28세의 미혼여성입니다. 28세이면 한창 일할 나이인데 저는 여성은 만28세가 정년퇴직이라는 내규에 의해 87년 12월 1일자로 강제해고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물려선다면 후배 누군가가 똑같이 당할 일이라는 생각으로, 노동청에 진정하고, 여러 단체에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별무소득이었으며 저를 해고시킨 후 3명의 교환원을 채용했는데 모두 임시직이라 합니다. 아예 싹부터 없애겠다는 속셈이겠지요...

이렇게 장영이씨가 열심히 싸웠는데도 병원측은 끝내 28세 정년이 성차별이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영남의료원의 경우 여자중에서도 약사나 간호원은 남녀 똑같이 50세이기에 남녀차별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진정을 접수한 노동청에서도 의료원의 사규가 물교부인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남의료원의 인사규정을 봤더니 약사나 간호원 전문직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이 28세 조기정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걸은 아예 20세가 정년이었습니다.

몇년전 서울에서 교환원으로 일했던 김영희씨는 43세 해고에 반발,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내규가 50세로 고쳐진 일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있는 전화 교환원은 50세에 퇴직인데 어떻게 대구에 있는 교환원은 28세에 퇴직당해야 합니까?

현장사례 2 - 김성인 (한일투자 노조부위원장)

갈수록 벌어지는 여자와 남자의 임금차이

우리 회사 노조집행부는 여성문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문제유발 등으로 사용자와 일부 직원으로부터 '여용(女用)'



발제 1 - 이승희

"이 법을 꼼꼼히 따져보면 결국 확실히 보장되고 있는 것은 조기정년·결혼 퇴직 거부와 1년의 육아휴직 권리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발제 2 - 최영희



현장사례 2 - 김성인

"월경급여에서의 차별, 승진·승급에서의 차별, 후생적 급여의 차별, 이렇게 세가지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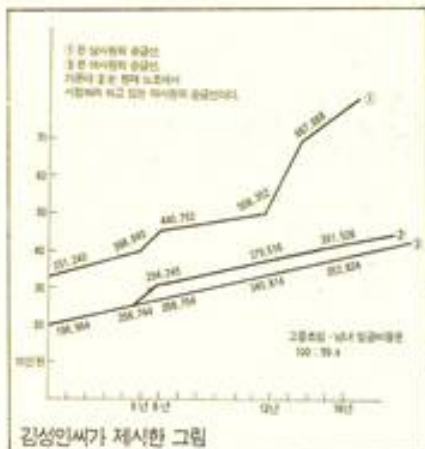
이라는 소리를 들을만큼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6년전 노조 초창기부터 우리 여조합원들의 협력이 컸던 이유도 있지요. 그러나 여성차별 현실은 우리 회사 역시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 그림을 봐주십시오. 말이 필요없죠? 86년도 노동부 임금 지침인 1백 대 85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세가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월급을 중심으로 하는 월경 급여에서의 차별이며 -대부분의 회사가 남녀 별도의 본봉표를 이용하여 같은 본봉표라 해도 5년 이상의 차이를 둡니다- 둘째 승급·승진에서의 차별, 셋째 점심

지상중계/남녀고용평등법 토론회



값·교통비·경조금·주택자금대출 등 후생적 급여의 차별입니다.

저희 작년 임금인상때 임금차별 완화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합원들 내부의 남녀감정대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조합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단결이 잘 되니 회사와 일부 직원들은 여성알레르기가 생겼고 회사에선 여직원 채용을 줄여 처음 34명이나 되던 여조합원이 현재는 1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이겨내어 후에 내 딸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엄마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사회의 모순을 이겨내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합시다.

현장사례3-정남희

기혼여성 구박받고 공장문을 열어라!

저는 작년 대한제분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4.50대 아주머니들이었어요. 밀가루가 호알게 날아들고 피근시간만 되면 머리가 하얗고 실랑이 엉겨붙어 끈끈하니 아가씨들이 들어왔다가는 한나절도 못하고 도망갈 거예요. 12시간 노동을 하고 일당은 5천5백원. 하루 일을 하면 저녁에 돈을 쥐요. 당연히 수당, 휴가 이런 게 없고 퇴직금도 없지만, 회사에서 누누히 '아줌마들 여기는 퇴직금도 없다. 일당 받는 걸로 끝이다' 하고 교육시키기 때문에 1년을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하면 잘 보여서 원공이 될 수 있을까 - 그곳에는 5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 관리자들에 잘 보여 원공이 된 아줌마가 한분 계셨습니다. 하는 생각뿐이에요.

한일방직이라는 곳에 잠깐 있는 적이 있는데 이곳은 식당에서 아줌마들, 아가



씨들 따로 앉혀놓고 민접을 봐요. 아줌마들한테는 굉장히 까다로워서 한사람씩 사내 의료실에 불러내 배꼽수술을 했는지 확인서를 받아오게 해요. 또 이렇게 다니다가 임신이 되면 퇴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지요.

그곳은 정신적인 구박이 굉장했어요. "여기는 왕년에 알아주던 공장인데 지금 아가씨들하고 똑같이 다니는 걸 고마와하라"고 하지를 않나, "아줌마들은 왜 이렇게 걸음이 느리냐" "아줌마 티가 난다"고 옥박지르기 일쑤예요. 또 영 급하기전에는 아줌마들을 기계에 올려주지 않아요. 몇년씩 청소나 운반만 하다가 퇴사하곤 합니다.

저는 고용평등법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같은 기혼여성노동자들의 처지, 일을 하고 싶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항상 실업자로 남겨두면서 필요할 때는 가장 열악한 조건으로 불러들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노조내에서는 결혼퇴직철폐와 동시에 바깥에 있는 주부노동자들을 취업시키도록 어떤 압력을 만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기혼여성 구박 말고 공장문을 열어라"

논평1-하창환 (금성부자 노조위원장)

여성들 스스로의 올바른 태도도 중요

저는 여성차별문제를 푸는 데 있어 여성들 자신의 올바른 관점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남성들을 적대시하여 문제를 잘못 풀거나 남녀평등의식을 여성만의 과도한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발상 등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논평2-신인령 (아대 교수)

사용자를 위한 특별법?

고용평등법에 적어도 포함될 사항으로 다음 네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용차별과 모성보호에 대한 엄격한 정의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되었을 때 법관이나 심판자의 자의가 개제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법에는 이 점이 빠져 있습니다.

둘째, 위법한 고용관행을 예시적으로 열거해야 합니다. 우리 법에는 임금에 관한 부분이 예시되지 않았다는 미비점이 있지만 그래도 모집과정에서의 성차별이 남녀차별이라는 것을 제시한 점 등은 의미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여성에 대한 고용촉진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사기업의 경우는 의무규정이 되겠지만 현재 법은 아무런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시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형식적인 것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없는 셈이며 또 구체절차 과정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우리의 현행법을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 일단 모법만을 가지고 볼 때 - 결코 그렇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굳이 특별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성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해서 새 여성보호조항을 지키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든 특별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내용이 헌법에 포함된 원래 의미의 고용평등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를 알기 위해서 전체 법 체계속에서 즉 헌법과 근로기준법과의 관

계속해서 고용평등법의 위치를 살펴봅시다.

먼저 헌법을 보면, 헌법에는 제11조에서 남녀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제32조 1항에 근로권 또는 노동권 보장이라는 조항이 있고 4항에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와 차별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이 32조 4항은 여성운동의 결과물로 작년 개정된 것인데, 구법에서는 여성과 소년에 대한 특별보호가 근로생활에서 필요하다는 조항만 있던 반면, 개정된 새 헌법에서는 여자와 소년에 대한 분리조항을 만들면서 동시에 단순히 보호조항에 그치지 않고 일체의 성차별을 금지하게 하는 구체화의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 표현이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신설조항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또 사회보장제도 조항인 헌법 제33조에는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36조 2항에는 '국가는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련조항들을 구체화하는 법률의 제정이 앞으로 따라야 하며 이중에서도 이를 고용의 측면에서 구체화하는 법이 근로기준법과 고용평등법이라는 점에서 이 두 법의 개정은 특히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53년 제정 이래 여성보호 관련조항이 그대로인 바, 따라서 이번 헌법개정과 더불어 -특히 헌법 32조 4항 여성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차별할 수 없다는 조항- 상당한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근로기준법을 보충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의 고용평등법의 내용이 강화되어야겠지요.

단, 우리의 현 근로기준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에 차별금지조항이 없다"는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간혹 "우리나라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헌법해석상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5조의 균등처우규정이 바로 '일체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사용자 하여금 성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차별금지는 세세하게 명시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그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현장사례 3 - 정남희

"우리 기존여성 노동자들의 처지, 일을 하고 싶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항상 실업자로 남겨두며 필요할 때는 협박으로 불러들이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어야 합니다"



논평1 - 하창환

"여성차별문제를 푸는데 있어 자칫 남성들을 적대시 하는 등의 태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논평2 - 신인령

"현행 고용평등법이 굳이 특별법이라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용자들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제를 포함해서 이미 53년부터 보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가 우리의 관건인 것입니다. 이를 자칫 "보호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하게 되면 오히려 "법에도 없는 걸 왜 보장해야 하느냐"는 식으로 사용자에게 구실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평등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도 "차별금지는 분명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이행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열거되어야 했는데 이것 빠뜨린 의도가 무엇이나" 이런 식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평등과 보호'에 대한 논의가 선진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

리겠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인 경향이 여성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고 평등을 강화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보호와 평등이 충돌된다'는 전제 아래 보호를 포기해가는 경향이 짙은데, 단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평등에 충돌되거나 모순되는 보호는 포기할 필요가 있지만 평등에 충돌되지 않는 보호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상에는 한편에는 여자의 생리적 보호 등의 특별보호가 있고 또 한편에는 모성보호가 있습니다. 전이중 모성보호에 관한 것은 더 강화하고 그 대신 그외 반드시 평등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은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응답

(당일 많은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으나 지면관계상 3개만 실었습니다)

결혼퇴직 강제사표는 위법

문: 회사에서 결혼퇴직 압력을 받아 강제사표를 쓰는 경우 위법이 됩니까?

답: 이는 고용평등법이 없더라도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어긋납니다. 부당해고로 처리되어 근로기준법 2장 27조에 의해 사용자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 강제사표라는 물적 근거가 남아있어야 부당해고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꼭 사표를 내게 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강제사표'라는 물증을 남기야 하겠지요.

이번 국회에서도 개정할 수 있다

문: 현재의 고용평등법을 오는 국회에서 개정할 수 있을까요?

답: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근본문제 해결못해

문: 아니면 시행령을 마련하여 차별규정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답: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어서 모법에 위임받은 사항이나 모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국한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시행령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단 운영의 묘를 기한다는 차원에서 잘 손질하면 보다 덜 나쁜 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

가정의 달, 선물주고 받는 달?

오늘날의 어린이·어머니·스승의 날은 가족적·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선물의 주고받기로 이뤄진다. 어린이들은 받는 선물의 크기에 따라 부모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부모는 자식의 공경심을 선물로써 가능하고, 선생님들 역시 선물의 양과 질에 따라 효능해 하고 스승으로서의 보람을 느낀다.

오성숙

(『함께 가는 여성』 편집위원)



5월이 되니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 날 등 잇달아 닥쳐오는 여러 날이 한 가정주부로서는 즐겁고 의미있는 날들이라기보다 부담스러운 날들의 연속임을 느낀다.

이러한 여러 날이 처음 특별히 일년중의 한 날로 지정되었을 땐지는 물론 바람직하고 건전한 의도에서 나왔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해마다 5월이 되면 이런 날들이 다만 겹치레의 구호와 행사, 선물 주고받기에서 그칠 뿐, 이 날들을 통해 어린이들의 장래, 어머니들의 삶, 스승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하는 자리는 꽤나 드물다.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단지 가족적 차원의 의례적 하루행사에 그칠 뿐이다.

어린이날만 보아도 상업주의적 목적에서 제공되는 중·상류층 어린이를 위한 약간의 프로그램들 외에 대다수의 어린이가 하루를 유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으레 그런 줄 알면서도 자연히 찾게 되는 어린이공원이나 야외의 놀이터는 인파속에서 보내는 어린이날은 부모나 어린이들 모두에게 아주 고통스럽고 지겨운 하루가 되어 버렸다.

선물인파로 봄비는 백화점을 보며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는 전도되어 있는 우리 세대의 부모·자식관계를

목격하게 된다. 한 둘의 자녀만을 가지는 요즘 세대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게는 온갖 물질적·정신적 사랑을 쏟는데, -3,4세부터 시작되는 피아노·주산·웅변·컴퓨터 등등의 과외활동도 그 한 예다- 이런 과잉사랑은 어린이들의 자유롭고 건전한 심신발달을 돕기보다는 어린이들을 구속하고 왜곡시키는 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린이에게 쏟아지는 이런 과잉애정에 비해 거의 핵가족으로 정착화된 오늘의 젊은 세대가 늙으신 부모에게 보내는 관심은 세월이 지날수록 아예 무관심으로 퇴색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부모로부터 받은 애정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말로써 우리 세대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평소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소홀히 대하는 무관심을 어버이날에 드리는 간단한 선물만으로 보상해 버리려함을 본다.

그런데 선물을 사려는 인파는 어버이날보다도 오히려 스승의 날에 더욱 몰리고 있음을 우리는 특히 중산층 아파트촌의 상가나 백화점에서 현저히 목격한다. 그리하여 스승의 날이 되면 어린이들은 엄마들이 사준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을 들고 학교에 가고 선생님들의 책상이 선물로 수북하게 되는 것이 이젠 아주 당연지사였다. 일찌기 볼 수 없었던

것이 당연시된 오늘날의 풍경에서 우리는 지금의 학생들이 전정 예전의 학생들보다 스승을 더욱 공경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가정의 달은 가족끼리만?

오늘날의 어린이·어머니·스승의 날은 가족적·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선물의 주고받기로 이뤄진다. 어린이들은 받는 선물의 크기에 따라 부모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부모는 자식의 공경심을 선물로써 가능하고, 선생님들 역시 선물의 양과 질에 따라 효능해 하고 스승으로서의 보람을 느낀다.

이런 세태속에서 오늘날 어린이들에게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선물을 제대로 사주지 못하는 할아버지·할머니의 방문을 달가와하지 않거나 경원시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으며, 선생님들 가운데는 선물하지 않거나 좋은 선물·돈봉투를 가져오지 않는 학생을 아예 무시해 버리거나 심지어 상당한 심리적 압력까지도 가한다고 말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계의 풍토속에서 오늘날 어머니나 학생들 가운데는 선생님에 대한 진정한 공경심에서보다는 선생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점수를 선물과 돈으로 사려고 하거나, 선물을 안함으로써 선생님께 받게 될 따가운 눈총을 피해보려는 의도에서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스승에게 드리는 제자의 선물은 오늘날 교육계에서 지극한 당연지사로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학부모의 돈봉투의 상납, 이 사회의 구성구성에 뿌리깊게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여타 돈봉투의 상납과 그 성격상 거의 다를 바 없이 되어 버렸다.

이처럼 선물만으로 끝나는 가정의 달을 통해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간에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경심·존경심을 키워가기 보다는 선물함이 본래 지닌 아름다운 의미를 잃어버리고 인간 사이의 감정을 선물과 돈으로만 계산·규정하는 부정적 의미만을 더욱 배우게 되는 것은 아닐까?

어버이날·어버이날·스승의 날은 가족적 차원에서 끝나는 선물 주고받기에 서만 그치지 않고, 이들을 즐겁게 하고 위로할 다채로운 행사들이 직장·사회단체·지역단위 등의 범사회적 차원에서 넓게 마련될과 동시에, 사회에 교육계에 산적해 있는 세 문제들이 사회적·정책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시정되고 대책이 마련될 때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바른 문화/한마당 어린이 민속학교

어린이 스스로가 건강한 문화를



민속학교에 참가한 어린이들

“전자오락은 신나고 재미있어요. 물끄러미 보는 적을 광장 때려 부수면 그 통쾌함이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시간도 후딱 지나가서 지겹지 않고요”

“긴 갈색 머리에 드레스를 입혀 놓은 미미는 백설공주처럼 예뻐요. 미미의 집에는 거실, 침실, 부엌살림... 없는 게 없어요.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는 매일 자랑만 한대요. 알뜰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요”

국적불명의 괴물들로 자라지나 않을까...

이땅의 어린이들은 해방 이후 마구 쏟아지는 외국의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개인주의적이고 비인간적인 문화, 우리 민족의 전통을 거부하는 온갖 문화풍토속에 방치되어 있다. 국적불명의 괴물들로 자라지나 않을까 염려하면서도 거대한 조류에 밀려 포기하고 마는 방조자가 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어른들이다.

그러나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나선 학부모, 교사들이 있다. 참다운 어린이 문화형성에 앞장서고 있는 한마당 교육문화연구회(회장: 김순진). 민속문화의 연구개발을 통해 주체성있는 교육문화를 널리 확산하고 공동체적인 삶을 정착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마당은 86년 여름 정식 발족되었지만 대학에 다닐 때 탈춤, 민속극회에서 활동하던 회원들이 졸업후 사회인 혹은 애기엄마가 되어서도 우리것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 없어 풍물을 치고 탈춤을 배우고자 70년대 중반부터 모임을 가

져왔다. 매달 만나서 익혀온 기량을 각기 개인의 일에서 공동의 일로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는 입장에서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 면면히 흐르는 공동체 의식, 건강함을 어린이들에게 이해·체득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갔다.

86년 7월에 시작, 현재 제5회를 준비하고 있는 ‘한마당 어린이 민속학교’는 이런 고민을 거쳐 탄생하게 된 것이다. 1박2일 혹은 2박3일 동안 민속놀이, 민요와 노래, 율동, 탈춤제조, 풍물, 대동놀이 등의 전통문화와 함께 자신들의 생활문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딩더 덩더 따따 더더딩 더더딩 덩딩”

“강강술래, 강강술래, 뛰어보세 뛰어보세 업신 업신 뛰어나 보세”

장고, 북, 징, 병아리, 날라리 등이 어우러진 흥겨운 풍물, 알소리 뿔소리 서로 주고받는 민요, 우리 고유의 문화가 아니라 공동체문화임에 눈을 뜬 어린이들은 쉽게 가락을 익혀 흥겨워 했고 모두가 하나됨을 느껴 나갔다. 잘못된 문화에 매몰되어 있다고만 생각되는 어린이들이 스스로도 자기네 생활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한 예로는 이런 게 있었다.

회원가운데서 배출된 교사들이 스포츠귀신, 전자오락귀신, 시험귀신 등으로 등장하여 자기가 최고라는 일장연설이 끝

나고 귀신들과 어린이들이 각기 다른 편이 되어 삼색싸움을 벌인 적이 있다. 어린이들은 합성을 지르며 자신들이 좋아하면서도 어쩌면 멀리해야 할 것 같은 귀신을 밀어내느라고 얼어지고 넘어지면서 힘을 모아 결국은 귀신을 쫓아버렸던 것이다.

참석한 어린이들의 열변 호응 속에 민속학교를 마쳤지만, 하루 이들의 일정으로는 일회성으로만 그칠 뿐 일상생활에 까지 뿌리박을 수 없다는 점과 함께 경제적인 부담없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 새로운 대안이 주말과 방학을 이용한 민속교실·문화교실·풍물교실이다.

이 교실들은 며칠에 걸쳐 집중적으로 실시해 내용을 충실히 담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 글씨와 그림 대신 한글이나 고유의 문양을 넣어보는 생활용품 만들기, 서양 중심의 역사 대신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로 꾸며보는 이야기 역사교실, 마을 가꾸는 글쓰기 교실 등으로 내실을 다져갔다. 창조하기보다는 주어진 대로 생활하던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어 보고 글과 이야기로 표현하는 데 큰 애착과 흥미를 보였다.

생활속에 뿌리내리길 기대

87년 12월 10여년 동안의 월래금을 모아 동교동 로타리에 사무실을 마련하기 전까지, 초여름 더위와 집안살림, 일에 허덕이며 다방 한 구석에서 머리를 맞대고 제1회 민속학교를 준비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40여명의 회원들은 그동안 익혀온 기량 연마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보통 50~60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하지요. 여기에 보낸 어머니들을 보면 학교 공부외에 이것저것 익히게 하듯이 한번의 경험으로 다양한 기회를 주어본다는 차원에 그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국적과 방향을 잃어가는 어린이 문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인적 이익과 직접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니 냉담할 수 밖에요. 사실은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이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물고가는 큰 물이 바뀌어야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거예요”

김순진 회장은 다시 한번 참다운 어린이 문화 창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마당은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어린이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건강하지 못한 문화들을 스스로 짚어내어 보고 그것들을 보다 주체적인 문화로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과 방법 모색이 아직도 커다란 과제라고 그는 덧붙였다. ■

직장내 폭력추방운동



5월 11일 부평4공단에서 가두홍보활동을 벌이고있는 여성노동자

보고서

범여성단체 운동으로 확산

직장내 폭력추방운동은 민우회와 한국 여성단체연합(여연) 공동주최로 4월 20일 열렸던 '직장내 폭력추방운동보고대회' 이후 민우회 차원을 넘어, 범여성단체의 운동으로 확산·전개되고 있다.

4월 28일 본회에 고발된, 부산 원창고무에서 일어난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행기도사건을 계기로 여연은 '다시 되살아나는 성고문'이라는 전단을 발간하고 가두 홍보활동을 벌였다. 5월 6일에서 8일까지 명동성당 일대에서 열린 이 가두 홍보활동에는 여연 산하단체인 여성의 전화, 기록여민회, 여성민우회, 여성노동자회,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 명동성당청년단체연합 여성부, 민족

본회는 또한 5월 2일 삼성제약노조로부터 구사대폭력에 관한 고발을 접수, 진상을 조사하는 한편, 격려자 삼성제약노조를 방문하고 사업주에게는 항의공문을 발송했다. 이 가운데 본회는 4월 8일 종로성당에서 개최했던 '여성노동자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긴급공청회'에서 채택한 '노동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5월 4일자 회신을 접수했다(소식 참조).

민우회에서는 6월 중순경 그간 모아둔 자료를 근거로 직장내 폭력추방을 위한 백서를 발간하며, 각 사업장에서의 생의가 차츰 틈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발창구는 계속 열려 놓을 예정이다.

미술협의회 여성부 등의 회원들이 참가, 서퐁디스크 레이테크 코스모스 전자의 여성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전단을 배포하고, 구사대의 폭력을 고발하는 사진전을 열었다. 이와 더불어 여성노동자회는 5월 6일 구로공단에서, 여성민우회는 5월 11일 부평 4공단에서 직장내 폭력추방을 위한 가두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장갑을 끼더니 온몸을 다치는 대로 때리고, 쇠파이프를 다리 사이에 끼워 위에서 누르는 주리틀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독하게 타라"며 무슨 약물을 먹이려고 해 질겁하며 발버둥을 쳐서 바지에 약간 쏟아졌는데 검은 바지가 하얗게 변해 버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사직서를 쓸 수 없다"며 버티자 "이런 개같은 녀은 팔 가벗겨서 해라"며 재봉기사주임인 박경태라는 자가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 했습니다. 이미 저의 옷은 밀치고 때리고 하면서 거의 찢어지고 반쯤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무섭고 견딜 힘이 없어서 그들이 불러주는 대로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들은 이런 중에도 용의주도하게 해고수당인 세달치 월급을 주고 합의서, 경위서 등에 도장까지 찍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 화로 "끝났다"는 보고를 하고 최해진이란 자가 "오늘 내가 너랑 살을 섞을 뻔했다"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또 찢어진 저의 옷을 새 옷으로 갈아 입혀 증거를 없애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오로지 죽고 싶다는 마음뿐이었고, 분해도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저처럼 폭행을 당하고 해고당했다는 노동자의 소식이 계속 들려와 주저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다면 이들의 파렴치한 만행이 이웃 공장으로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것이기에 쭈서대는 팔다리를 끌고 여러분앞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당한 것은 눈만 뜨면 우리들이 당하던 욕설·구타가 더 실하게 표현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인간답게 대우받고자 하는 저희들의 바램이 결코 외면당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채납하고 산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눈꼽만한 권리조차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누렇게 든 얼굴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기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것도 억울한데 개·돼지처럼 취급받으며 일할 수는 없습니다. 저를 때렸던 쇠파이프가 여러분의 머리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기주머니 채우는데만 눈이 어두워 사람다운 줄 모르고 날뛰는(주)원창의 강규원사장 같은 기업주는 발 붙일 땅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주머니, 언니, 동생들! 관리자의 눈을 피해 힘내라는 격려의 말씀, 정말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하루빨리 다시 돌아가 같이 울고웃고 싶습니다. ■

호소문

"엘리베이터를 사설 성고문실로"

다음은 강제된 사직서 쓰기를 거부하다가 회사측에 의해 폭행을 당한 후, 이의 억울함을 본회에 고발해 온 부산 원창고무 여성노동자의 호소문이다: 편집자주

저는 부산에 있는 (주)원창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강제사직서를 제출한 양태입니다. 저는 죽어도 하기싫은 연장근무를 사흘이 멀다고 하여도, 이년 저년 욕을 먹어도 사장을 원망하기보다는 못배워서 어쩔 수 없는 처지를 원망하며 이를 악물고 살아온,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이런 제가 끔찍한 폭행, 아니 말로만 듣던 고문을 당한 것은 작년 8월에 '풍영'에 근무했었고 그때 일어난 농성에 참가했다는 단 하나의 사실 때문입니다.

회사일이 너무 힘들어 구경 지나고 그만 두려 하자 일당을 올려준다며 억지로 잡아둔 그들이 "무조건 나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동생들의 생계가 저에게 달려있을 뿐 아니라, 정당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사직서이기엔 당연히 사직서 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대충신인 안전관리실의 김시찬, 최해진, 박준일 등을 시켜 3월 30일부터 무려 20여일이나 감금·폭행했습니다. 그래도 거부하자 4월 22일, 엘리베이터 안에 고문실을 꾸며놓고-쇠의자 1개, 수갑, 쇠파이프가 있었고 붉은 전등이 걸려있었습니다-그안에서 마지막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실장인 김시찬의 "시작해라"는 말과 함께 안전관리원 3명이

항의전화를 합니다./
강규원사장 (051) 555-4395
김시찬 안전관리실장 (051) 805-8641



“꼭 합법성을 쟁취 할 터”

창립 5개월만에야 겨우 마련했다는 서울 중구 다동의 자금노 사무실에는 아직까지도 신고필증이 없어 파견근무를 못하고 있으므로 오전에는 각자의 직장 일을 마치고 오후에야 서둘러 모이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로 붐비고 있었다.

“노조를 창립하고도 신고필증을 받지 못한 채 버텨온 지 벌써 6개월째입니다. 그간 우리들이 벌여온 모든 활동은 정부 주도의 관제노조에서 벗어나 독립적 자치노조를 만들기 위해 투쟁했던 폴란드의 자유노동조합운동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노동부나 노총 등 관계기관의 방해가 극심했지만 우리 전 조합원들은 똘똘 뭉쳐 맞서왔습니다. 지금으로선 최우선 과제인 합법성쟁취도 우리의 단결 여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최재호위원장(현 한국산업리스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왔으며 지금은 자금노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한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음을 아울러 강조했다.

작년 11월 27일 창립

자금노는 작년 11월 27일 기존의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이하 금융노련)의 경직성과 비민주적 운영을 비판하면서 서울 종로성당에서 제2금융권 및 특수은행 45개 노조조합원 2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권익주의와 불신의 시대를 청산하고 자주적 민주적 노동조합운동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고양'을 위해 창립되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은 노조의 교섭대상이나 교섭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금노 산하에 현재는 51개 단

위노동조합, 1만5천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있다.

“그동안 기존 금융노련은 10개 은행 노조가 운영을 독점해 왔으며 나머지 중소 비은행 금융기관노조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기존 금융노련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노조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었으며, 관의존적인 자세로만 일관, 전체 금융기관의 노조를 지원하는 상급단체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없다는 주장이 늘 일고 있었지요”

최위원장은 이미 85년부터 제2금융권 노조를 중심으로 금융노련 규약개정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으며, 지난해 5월에는 13개 금융노조가 모여 한국노총의 4·13 호헌지지성명에 대한 반박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제2금융권 노동운동이 가열됐다고 설명한다. 이후 제2금융권에서는 지난해 6월 투쟁 이후 민주노조가 속속 생겨났고, 마침내 자금노라는 매듭을 맺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자금노의 창립은 한국노총 등 노조상급단체는 물론 노동부 등에도 큰 충격을 던졌다. 이는 노동운동에 또 하나의 민주화바람을 몰고 온 새로운 연대조직이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명실상부한 '제2의 노총'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으로부터 비롯됐다. 따라서 자금노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방해가 지금까지도 계속 그치지 않고 있다고 최위원장은 들려준다. 자금노가 87년 11월 28일 처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자 노동부는 '기존의 금융노련과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서를 반려했다.

자금노의 창립은 한국노총 등 노조 상급단체는 물론 노동부 등에도 큰 충격을 던졌다. 이는 노동운동에 또 하나의 민주화바람을 몰고 온 새로운 연대조직이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명실상부한 '제2의 노총'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으로부터 비롯됐다. 따라서 자금노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방해가 지금까지도 계속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금노는 2월 4일 서류를 보완,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2월 5일 기존 금융노련의 정기 대의대회에서 보험 등 제2금융권을 조직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조직대상 중복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정된 금융노련 규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불과 3일전인 3월 2일 한국자동차보험 등 8개 보험회사가 새로운 산별노조인 '전국보험노동조합연맹'을 발족시켰고 노동부는 지난 4월 12일 전보리에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했다. 이리하여 노동부는 또다시 전보리에 신고필증을 이미 교부했으므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자금노에 인준증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최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에 공개질의서를 내고 최명현 노동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하는 한편 그뒤 신고필증을 교부받기 위한 대책을 모색했으나, 노동부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해 이제는 여론에 직접 호소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노조차원 최초의 직선제 실시

관계당국의 자금노에 대한 계속적인 와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자금노는 산하 단위노조의 투쟁활동지원, 교육활동,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대미보험시장개방 반대성명, 현대엔진노조 지지성명 등의 활동을 통해 자주적 민주노조의 터를 굳건히 닦아 왔다.

지난 3월 연합노조차원에서 실시된 최초의 노조위원장 직선제투표에서 80.4%의 투표율, 86.6%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최위원장은 “직선제로 인해 조합원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노조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20%의 지지속에서 대표권을 행사하는 현 산별노조 집행부의 노동조합과는 크게 대비되는 것으로 자금노의 민주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사무직노동운동의 새 장을 열게 될 자금노의 합법성을 쟁취하려는 힘겨운 작업은 그를 조합원만의 일로만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사무직노동자들이 진정한 노동자의식에 눈뜨고 있음을, 그로 인해 전체 노동자들의 진정한 단결과 노동조합의 민주화가 앞당겨짐을 인식한 모든 이들의 자금노에 대한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

“모든 문제는 우리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이 얼마나 굳건가는 우리의 단결 여하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조합원들의 뜨거운 참여열기를 최위원장은 이렇게 전했다. ■

우리동네이야기

봄햇살이 무르익다 못해 따갑게까지 느껴지는 지난 5월 1일 오후, 중동아파트단지안 도로 한복판에서는 3백여 주부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중동아파트도로는 산업도로가 아니다" "도시의 무법자인 레미콘, 유조차, 화약차 절대통행금지" "살인차량 횡포에서 우리자녀 구출하자" 등의 피켓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분명 데모대였지만 연방총이 20대가 아니라 3,40대인 것이 흔히 보지못하던 특색이었다.



주민들이 농성하던 길에 자갈은 20미터 길이의 도로가 생겼다.

그동안 주민들은 여러 차례 시청에 개선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었지만 번번이 묵살되어 왔다. 그래서 더이상

상습 교통사고, 주민들이 막아냈다

원혜진 <주부·경기도 부천시 중동주공아파트 52동 202호>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30일 아침, 상지국민학교 3학년 남자어린이가 등교길에 타이탄트럭에 치인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런데 현장검증을 나온 교통경찰이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런 일이 여기뿐인 줄 아느냐"고.

이 소리를 전해들은 엄마들의 가슴속에는 분노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위로 - 이 도로는 양옆으로 상가·병원·학교 등이 있어서 주민들은 늘 그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산업도로처럼 대형차들이 질주하는데도 단지 시(市)의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과 주민들의 생명이 이때껏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문서상의 의사전달만으로는 관찰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던 차에 이 사건을 계기로 실력행사에 나서게 된 것이다.

5월 1일 오후 1시 주부들은 정문과 후문을 바리케이트로 막아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준비한 피켓을 들고 도로중앙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구호외치는 것을 쑥스러워 했지만 나중에는 학생이나 노동자들보다 더 열심히, 씩씩하게 "도로전면철폐"를 외치고 책임있게 담배배출 관계자의 출두를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했다.

5월 2일 8시 우리 주부들은 어제의 그 장소에 다시 주저앉아 시장의 출두를 요구했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들은 바리케이트를 넘어 아파트정문앞의 네거

리를 점거하여 주저앉았다. 교통이 마비되어 할수없이 나타난 시장이 막연하고 애매한 약속만 늘어놓아 우리는 "어용시장 물러가라"고 외쳤고 시장은 슬그머니 물러나버렸다. 점심도 굶은 채 땀벌에 앉아서 이틀씩이나 소리를 질러댔던 주부들이 이제는 지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출근도 하지않고 주위에서 성원을 보내던 남편들과 관리소직원들의 중개로 우리는 한발 물러나 다시 협상할 것을 결정했다. 도로전면철폐가 아니라도 실제로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였다.

제출한 새로운 요구사항에 시장이 직접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장은 1시간반이 넘도록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자신의 권위와 시간은 금쪽처럼 아까워하면서도 엄마들의 자존심과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시장에 대해 우리는 정말로 분노가 일었고, 마침내 연좌농성거리에서 2백미터 떨어져 있는 국도로 나가자는 합성이 일어났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당황한 시청직원의 무전연락을 받고 곧바로 시장이 왔다. 시장은 그 즉시 각서내용을 읽고 서명·날인했다. 우리가 이긴 것이다. 이틀동안 질러댄 큰 목소리로 우리는 힘껏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열썬었다.

요즈음 20미터 간격으로 놓여진'턱'을 넘으며 장애물경기처럼 엉금엉금 기어가는 차량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비록 작은 힘일지라도 이것이 모여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

날 말 맞 추 기



<가로열쇠>

① 6월이면 찌는듯한 더위가 시작되죠. ③ 날라

리. ⑤ 사방으로 날아 흩어짐. ⑥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 ⑦ 공. ⑧ 화려하고 사치로움. 활짝 핀 꽃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들죠. ⑨ 실력자가 허수아비를 내세워 원격조종으로 다스림. ⑩ 검사기 공소를 제기함. ⑪ 칼로 찌름으로. ⑫ 난리가 일어남. ⑬ 꽃이 만발하여 화려함. ⑭ 수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이르는 말. 인산○ ○. ⑮ 서울에서 제주로 전화를 걸면... D.D.D라고도 하죠.

<세로열쇠>

① 북돋우지 않고 단지 환영만을 한 영화. 반사의 음씨가 실종이죠. ② 위엄있는 존재. ○○당당. ③ ○○○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외이로다. ④ 비록 말이 없지만 전리를 가죠. ⑤ 이치에 꼭 맞음. ○ ○하심 말씀이죠. ⑦ 아주 재미있으면 손바닥을 치며 크게 웃지요. ⑧ 토하고 삼사하면서 배가 뽀시 아픈 증세. 여름에는 특별히 주의해야지요. ⑨ 사람이나 자가 불벼어 자타가 통행이 힘들. 오죽하면 교통지옥이라 할까요. ⑩ 곤장의 한가지. 호랑 때. ⑪ 기세가 대단함. 요즘 이러다가 망한

사람이 많죠. ⑫ 부부가 동행함. ⑬ ○○○ 눈물 고개 넘어 넘어 이별고개-.

<지난호 정답>

교	과	서	오	미
만	술	만	리	정
풍	사	무	년	
어	중	이	떠	중
자	제	참	무	고
진	편	문	지	기
거	푸	집	참	미
주	인	공	금	명

●정답은 다음호에 실립니다. 6월 25일까지 접수된 정답을 심사 후, 그중 다섯분에게 6개월치 신문을 우송해 드립니다.
●지난호 정답자는 경기도 고양군 화전읍 200-1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학과 2년 김민아씨, 마산시 중성동 167번지 박경민씨, 마산시 중성동 110-7 이현영씨,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 149-1 홍순형씨입니다.

여성민우상담실

물음

저는 손가락이 찢렸어요.
22살의 처녀가 손가락이 없다니,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과자공장
에서 초콜렛을 5년동안 만들어 왔습니
다. 과자를 먹을 줄 아는 아이라면 제가
만든 초콜렛을 안먹어본 애는 없을텐데
...

초콜렛을 만들려면 커다란 초콜렛 덩
어리를 분쇄기에 부셔서 이것을 녹인 다
음 하트모양에서 길다란 사각형까지 어
린이들이 좋아할 온갖 모양으로 만들어
예쁘게 포장한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 초콜렛 덩어리를
분쇄하는 공정이었어요.

그날, 제 인생이 무너지 내리던 그날
도 저는 분쇄기앞에 서있었습니다. 땀
물아가는 날카로운 뿔날을 지켜보고 있
는데 비닐조각 하나가 초콜렛 덩어리에
붙어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초콜렛
분쇄속에 몸에 해로운 비닐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손을 집어넣었어요.

아, 날카로운 통증, 저는 넋이 나가버
렸습니다.

공장이 뒤집히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저를 업고 뛰는 것 같았습니다.
공장근처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
지만, 오른손 둘째 손가락이 없어지고
세째 손가락은 굳어서 움직이지도 않습
니다.

이 손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참외 한 봉지를 사들고 열 라
인의 정숙이가 찾아와 한참 울고 갔어요.
원래 초콜렛분쇄기에는 안전망을 끼워야
했는데 고장이 나는 바람에 벗겨 놓은
채 작업을 하도록 한 회사를 원망했습니
다. 또 급한 김에 그 비닐조각을 꺼내기

전 기계를 멈추지 못한 제자신을 한탄했
습니다.

울고, 또 울고 내려다 보면 제 손가락
은 잘려 나간 채 하얀 봉대만 감겨있고...

김순희 드림

대답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울던 아이도 울음을 뚝 그치게 하
는 초콜렛, 이 묘약을 만드는 공장에서
순회씩 같은 불행한 산재가 발생했다니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돌아보면 곳곳에 이러
한 산재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지요. 프
레스기계앞에서, 건축공사장에서, 저기
강원도 탄광갱내에서, 시민의 발인 버스
에서, 덤프트럭에서, 남땀하는 전자공장
에서,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공장에서, 타
자 치는 사무실에서...

1년이면 14만 2천여건의 산재가 발생,
1만여명이 신체장애자가 되고, 더 무서
운 직업병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인생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지요, 많은 산재노동자들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겪은 엄청난 비극과 좌절을

덜고 일어나 이제는 같이 모여 생존권을
확보하고, 권익을 지키려는 모임을 만들
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6월 민주항쟁이후 7, 8
월 노동자대투쟁과 올 상반기 임금인상
투쟁을 겪으면서 사회전반에 밀려오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각 개별 노동자(산재노동자)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문제를 어
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겠
습니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
는 '치료'와 '보상' 문제입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면 사고 이전의 상태
와 가장 가까워지느냐로 현대의학으로
가능한 최상의 치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선택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점이지요, 전문의가 있는 큰 병원을
권하고 싶습니다.

보상의 방법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의
한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의
한 것이 신속하고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
는 반면 보상이 비현실적이라는 커다란
단점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은 다음 민사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산재보상의 경우 '무과실
책임주의'라 하여 사고원인(과실여부)이
누구에게 있던간에 무조건 치료(요양보
상) 보상(휴업보상·장해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민사소송의 주된 내용은 산재
로 인해 노동력을 얼마나 잃어버렸느냐
-노동력상실률은 전문의사가 진단-와
산재발생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
과실상제비율은 판사의 판단-입니다.

민사소송은 어렵지 않으며, 모든 책임
에 대해 회사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업무에 두고 치료종결무렵(장해등급신청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소
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나 각서
는 민사소송 청구를 어렵게 하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판례 등은 다음
호에 계속하겠습니다. ■



손가락이 찢렸어요

산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치료'와 '보상'
입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면 사고 이전의 상태와 가장 가까워지
나로 현대의학으로 가능한 최상의 치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선택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점이지요.
전문의가 있는 큰 병원을 권하고 싶습니다.

민우회·서교협 주최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토론회' 열려



5월 13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는 민우회와 서울교사협회의가 공동주최한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5월 9일부터 15일까지의 교육주간 행사의 하나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학부모의 입장에 선 민우회 회원 3명, 교사의 입장에 선 서교협 회원 3명이 참여하여, 학생들이 입시위주·개인주의적 굴레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만난 첫토론회였던 만큼 현실에 대한 분석외에 대안이나 극복방안 등이 깊숙이 토론되진 못했지만, 많은 참석자들은 교사와 학부모가 만나 문제를 같이 풀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자리라는 점에서 반가운 박수를 보냈다.

노동부, 민우회 공개질의서에 한달만에 답신 보내와

민우회는 5월 7일 '여성노동자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5월 4일자 회신을 접수했다.

지난 4월 8일 본회가 개최한 '그린힐 화재참사를 계기로 한 여성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긴급공청회'에서 채택된 공개질의서의 답신으로 근 한달만에 보내져온 것. 회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실적으로 근로감독 행정여건과 업무실태가 사전에 모든 사업장을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주

2. 화재사건후 3월 29일 전지방노동관서에 지시, 근로자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3. 그린힐화재로 인한 피재근로자의 재해보상문제는 산재보험에 의거 보상 및 요양조치를 하였고(그린힐섬유는 87년 9월 1일자로 산재보험에 가입)

4. 근로기준법상의 기숙사 시설기준 등 위반에 대한 벌칙은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토

본회는 이 회신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무성의하다고 판단하여 노동부의 성의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5월 8일 인천 민우회 해님방 집들이 겸 마을잔치



5월 8일 인천시 십정동에 있는 민우회 해님방에서는 새 집으로의 이사를 축하하는 집들이겸 마을잔치가 열렸다.

해님방 어린이들 20여명과 그 어머니들,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간 민우회 회원들이 함께 어우러진 이 자리에선 각자의 소개, 어린이들의 노래자랑, 축원을 비는 고사 순으로 모임이 진행되었으며 이어 바로 앞 시장터에서 민우회 문화부가 준비한 '떡배와 볼배' 인형극 공연이 있었다. 동네 꼬마들 1백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형극이 막을 내린 뒤에는 서로 인형을 만져보려 앞으로 물리는 바람에 단상이 무너질 뻔하기도.

청계피복노조 7년만에 부활 5월 2일 신고필증 받아

5월 2일 청계피복노조가 7년만에 부

활했다. 널리 알려졌듯이 전태일씨의 분신으로 71년 결성된 청피노조는 81년 1월 노동계정화조치로 해산명령과 함께 경찰력에 의해 강제해산됐었다(지난호 참조).

그러나 84년 '노조복구대회'를 출발로 조작재건에 나선 청피노조는 법외노조로 활동하며 잇단 '합법성쟁취대회'를 벌여 다수가 구속되는 수난의 투쟁을 해왔고 지난해 11월 노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지역별노조의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종로구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청계피복노조의에도 서울제화공 노동조합, 서울지역인쇄노동조합도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게 되어 단위노조를 만들기 어려운 영세업체근로자들이 업종별로 지역노조를 결성,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대구여성회 5월 14·15일 '여성문화 한마당' 열려

'여성문화 한마당-여성이여!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가 대구여성회 주최로 5월 14일, 15일 오후 4시 대구YMCA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왜곡된 문화를 거부하고 여성일반이 가지는 고통과 허위적인 자아상을 깨뜨리는 데서 진정한 여성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를 다채로운 내용으로 보여준 한판이었다.

14일에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종자한마당'이 있었는데 결혼중속을 단죄한 모의재판, 주부역할극, 노래극 '우리는 지금 꼬리야로 간다'(농축산물 수입개방 문제)'로 진행되었다. 15일에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투쟁 사례발표, '순영이의 사랑이야기' (슬라이드상영), '꽃다운 이내청춘' (연극)이 펼쳐졌다.

문귀동 재판 두차례 열려 시종일관 범행 부인

5월 17일, 31일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는 부천시성고문사건으로 구속된 문귀동에 대한 두차례 재판이 열렸다.

첫날 문귀동은 시종일관 성고문 사실

을 부인하여 방청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둘째날에는 피해자 권인숙 양의 증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첫날인 17일 3백여명의 방청객이 몰려 법정을 빠져나가는 문구동에게 격렬한 항의표시를 하자 둘째날인 31일에는 아예 50명분의 방청권을 발부해 더 큰 항의가 일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6월 18일.

생산직·사무직 80여개 노조가 모여 '서울 지역노동조합협의회' 결성

5월 29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서노협)가 결성되었다. 지난해 12월 맥스텍사 위장폐업을 계기로 서울지역 민주노조대표들이 결성을 추진했으며 1백23명의 대표가 1월 25일 준비위원회를 만든 바 있다.

서노협은 결성 선언문에서 '전국의 노

동자와 연대하고 민주세력과 협력하여 사회의 완전한 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발전시켜 권력과 노동귀족에 의해 왜곡되고 타락한 노동조합의 역사를 바로 잡을 것'을 다짐했다.

서노협에는 현재 청계피복·서울지하철·서울대병원 등 80여개의 사무직·생산직노조가 가입해있다. 전북과 마산·창원지역에는 지역노동조합협의회가 이미 결성되어 있으며 인천지역노동조합 협의회도 6월 12일 창립할 예정이다.

6월 4일 세계환경의 날 기념 '공해추방을 위한 시민한마당'

제16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 '공해추방을 위한 시민한마당'이 6월 4일(토) 3시 명동성당 문화관 2층에서 열린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 공해한대시민운동협의회,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 공해연구회 등 공해추방운동을 벌이는 시민운동단체들이 주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부: 공해특별시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데... 강연: 인명진복사

● 2부: 이곳이 어디 사람사는 곳입니까? (피해주민 증언)

- 박길래씨(상봉동 진례중 주부)

변기용씨(등촌동 대경주택공해대책위원회 회장)

● 3부: 공해꽃(마당극) - 반(反)공해놀이패

- 첫째마당: 고강동의 아이들

둘째마당: 검은 민들레

셋째마당: 만세! 등촌동 이주민들

● 기타: 사진전(해·공해), 풍물굿

이번 시민한마당은 의례적인 세계 환경의 날 기념이란 차원을 넘어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 서울의 심각한 공해상을 문제화 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다. ■

두 딸의 어머니로서 한 아이를 양민국민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이다. 아직 셋방살이를 면치 못한 서민층 주부로서 힘겹게 살아가는 형편이지만 꿈이 하나 있다면 두 딸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일이다. 가난하고,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행여나 우리 아이가 천대받고 기죽는 일이 없는지 언제나 걱정을 하면서 살아 간다. 이러한 염려 탓으로 평소에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시누이의 소개로 우연히 보게 된 「함께 가는 여성」 속에서 교육문제 기획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해에 실린 어머니회에 대한 글을 읽고 나는 약간의 의혹을 갖게 되었다. 의혹이라기보다는 실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것 같다.

평소에 「함께 가는 여성」을 읽으면서 나는 민우회라는 여성단체가 대체적으로 이 사회속에서 소외되어 있는 여성들의 편에 서서 일한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회'에 대한 글은 민우회에 대한 나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우선 내용이 산만하고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이긴 하지만 기존의 어머니회를 봐고든다는 식의 내용은 내가 생각한 방향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함께 가는 여성」을 읽고



'어머니회'에 대한 거부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아이가 3학년이 되도록 어머니회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 그것은 물론 여러가지 면에서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어머니회가 요구하는 2,3만원의 회비가 지금의 나의 처지로는 부담일 수 있고 반듯한 옷 한벌 없

는 형편에 어머니회에 참여한다는 것이 용기가 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학교를 드나들 때마다 마주치게 되는 선생님의 얼굴을 어떻게 댄손으로 바라볼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모든 것은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똑같이 겪는 고충이다. 게다가 나는 어머니회가 돈있고 배운 여자들이 으스스하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머니회에 참여하고픈 생각은 없다.

이 글을 읽고 솔직히 느낀 바는 어머니회 토론회를 주도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도 어쨌거나 어머니회에 뽑힌 혜택 받은 학부모들로서 여기에서 소외되고 있는 대다수 학부모의 심정이나 고충에는 별반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으로, 민우회의 학부모 모임이 혜택 받은 소수의 학부모에 비중을 두고 일하기보다는 소외된 다수의 서민층 학부모들과 함께 일할 때 제대로 압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말하고 싶다. 나 같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허술한 옷을 입고도 편안히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회가 된다면 나도 기꺼이 참여하여 이 땅의 모든 아들 딸들을 위해 힘껏 일해 보고 싶다. ■

이혜숙 (주부·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녀고용평등법 자료집을 판매합니다

정부는 직장내 남녀차별을 시정한다는 취지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의 고용평등을 보장하는 법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오히려 개정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집 「남녀고용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는 지난 5월 7일 민우회와 여성한국사회연구회가 공동주최한 '남녀고용평등법 공개토론회'와 함께 발간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의 실체와 문제점,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 내용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의 의미와 한계 - 대외적인 국가채면치례용이라는 남녀고용평등법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 남녀불평등,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직장내 남녀차별실태
- 결혼희칙 · 차별정년철폐 어디까지 왔나 - 영남의료원 장영이씨 · 대한부자신탁 주순녀씨 · 25세 조기정년 이경숙씨 · 콘트롤데이터의 사례를 통해본 실태점검
-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원칙 -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무엇이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외국의 입법사례와 함께

살펴봅시다.

- 부록: 남녀고용평등법 전문과 시행령 전문
- 가격: 1천원
- 판매처: 민우회 사무실 및 전국 몇몇 서점
- 문의: 313-1060

직장내 폭력추방운동 백서도

본회는 6월 중순경 '직장내 폭력추방운동 백서'를 발간합니다.

지난 3월부터 전개해온 '직장내 폭력추방운동'의 일환으로 발간되는 본 백서는 노동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자행되어온 폭력, 오늘 이 순간에도 더욱 교묘하게 존재하고 있는 폭력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직장내 폭력의 원인은? 폭력에 의한 노동운동탄압의 역사는? 80년 중반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의 폭력의 양태와 본질은 어떠한가? 또 앞으로의 전망과 극복방안은? 이상의 내용이 담겨질 것입니다.

- 문의: 313-1060

아리랑택



「함께 가는 여성」에서 알려드립니다

- 본 신문의 발행일은 매달 1일입니다.
-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직장 이야기> (이런 모임) <독자독후감> (<함께 가는 여성>을 읽고) 등의 난은 독자의 참여로 채워지는 난입니다. 원고를 직접 작성해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본 편집실로 사건을 알려 취재를 맡겨주셔도 됩니다. 자신이 겪은 일,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사회사건에 대한 견해 등 내용과 형식에 상관없이 어떠한 원고도 환영합니다.
- 원고 등을 우송하실 분은 120-0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3가 30-6 한국여성민우회 「함께 가는 여성」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 가는 여성」을 받아보시려면

- ① 본 신문은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실

이나 전국 몇몇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가격은 1부에 5백원).

② 본 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하시려면 본회의 「신문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연회비 7천원). 아래의 온라인이나 지로를 통해 송금하신 후 전화로 본인의 성함과 주소, 연락처 등을 말씀해주시면 매월 신문을 우송해 드립니다.

- 온라인 송금하실 곳
상업은행 109-08-195935 흥영주
제일은행 277-20-195962 흥영주
- 지로창구 이용
가까운 은행 어디든지(한국은행·산업은행 제외) 지로창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본회 번호: 7519497). 이용하실 분은 구독신청과 함께 말씀해주십시오. 우편으로 지로용지를 보내드립니다.

- ③ 자세한 문의는 313-1060

한국여성민우회 상담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생산노동 현장에서 우리 여성들이 안고있는 고민을 안심하고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되고 그 가운데 발굴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여성문제: 연애, 결혼, 성문제, 그외 성차별적 문제
- ② 노동문제: 임금 및 각종 수당, 해고, 산업재해 및 노동조합 활동과 교육에 관한 문제
- ③ 교육문제: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느끼는 자녀양육, 학교 교육에 관한 문제

상담시간은 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면접상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 여성들이 처해있는 여러 현실을 감안해서 서신상담과 전화상담(313-1060)도 합니다.